

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1. 1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 도시 세력권 내 도시발전에 따라 산업단지 및 주택재개발, 재건축,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·건설 폐기물의 원활한 매립을 위하여 최첨단 선진국형 “에어돔공법”의 폐기물 복합처리장을 확장,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
-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산업발전과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폐기물처리시설)결정 변경 제안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□ 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결정 변경(안)

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
- 시설의 종류 : 환경기초시설
- 시설의 명칭 : 폐기물 처리시설(매립장)
- 면 적 : 기정 160,260㎡ 변경 391,588㎡ (증 231,328㎡)
- 용도지역변경
 - 당 초 : 농림지역 146,842㎡, 보전관리지역 44,268㎡
 - 변 경 : 계획관리지역 191,110㎡
- 사업시행자 : 주) 케이엠그린 대표이사 김강호
- 사업기간 : 2008년 3월 31일 ~ 2026년 12월 31일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내용

위 치	변 경 내 용		면적(m ²)	결정(변경)사유
	기 정	변 경		
산 동 면 백 현 리 산 192-1번 지 원	농림지역	계획관리	146,842	폐기물처리시설 결정(변경)을 위 한 용도지역 변경
	보전관리	계획관리	44,268	

(2)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

○ 환경기초시설 (폐기물 처리시설) 결정(변경)조서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기물 처리시설	•사업장(일반)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매립장	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	160,260	증)231,328	391,588	2007. 12.27	경북고 제2007- 632호

○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(변경)사유서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(변경)사유
환경기초시설 (폐기물 처리시설)	사업장(일반), 건설 지정 폐기물 매립장	•구미시 및 직·간접영향지역내 도시발전에 따른 공업 단지, 주택,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장기적으로 원활히 해결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배후할 수 있는 도시환경기초 시설인 폐기물 매립장을 확장·조성하 는 계획을 수립 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)을 신청함.

3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
-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

《참 고 사 항》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8-2-2-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(1)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
- (2)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
- (3) 시·군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
 - ① 도로중 주간선도로
 - ② 철도중 도시철도
 - ③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- ④ 공원 (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)
 - ⑤ 유통업무설비
 - ⑥ 학교 중 대학
 - ⑦ 운동장
 - ⑧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- ⑨ 화장장
 - ⑩ 공동묘지
 - ⑪ 납골시설
 - ⑫ 하수도 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- ⑬ 폐기물처리시설
 - ⑭ 수질오염방지시설